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장 정 희 의원)

의 안 번 호	26-27
------------	-------

발의년월일: 2026. 2. .

발의자: 장정희, 강동오, 남해석, 안미자,  
이상원, 장영준,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홍지광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세부 설치표준안(제8조)
- 바. 공사현장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 3. 관계법령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및 제4조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4. 조 례 안 : 붙임

####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6. 2. 24. ~ 2. 28.

나. 의견제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포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보도 점자블록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설치표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침을 준용하되, 마포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 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6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

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별표 1 점자블록 설치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 김건우
연 락 처	02-3153-9792